

의안번호	2203283
의 퇴 인	고동진 의원
회 답 일	2024. 10. 4.
추 계 번 호	24F32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및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년 1,919.3억원, 2028년 148.3억원 등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5,504.1억원(연평균 1,376.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5년 1,899억원, 2027년 1,449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5,007억원(연평균 1,669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개정안에는 7인 미만 승용차에 대한 감면한도를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나 자료의 부재로 추계를 하지 못함에 따라 과소추계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출산 가구가 출산한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 취득가액 및 취득세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수는 2025년 20.3억원, 2028년 148.3억원 등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497.1억원(연평균 124.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2025년) 현행 적용기한 내이므로 주택 취득가액 및 취득세 감면한도 상향 조정에 따른 감면액 증가분만큼만 세수효과 발생
 - (2026~2028년) 적용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액 전체에 해당하는 세수효과 발생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계	연평균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1,899	-1,659	-1,449	-	-5,007	-1,669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연장(안 제36조의5)	-20.3	-169.9	-158.6	-148.3	-497.1	-124.3
합 계	-1,919.3	-1,828.9	-1,607.6	-148.3	-5,504.1	-1,376.0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출산 및 양 육지원을 위한 감면)	○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 기한 연장 - 감면대상 확대: (현행)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개정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 7인 미만 승용차 감면한도 확대: (현행) 140만원 (개정안) 200만원 - 적용기간 연장: (현행) 2024년 12월 31일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2	안 제36조의5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출산 가구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취득당시가액: (현행) 12억원 이하 → (개정안) 15억원 - 감면한도: (현행) 500만원 → (개정안) 800만원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출산 및 양 육지원을 위한 감면)	○	
2	안 제36조의5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 득세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2024년 국회에서 심의·의결되어 2025년부터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세수효과는 2025년에서 2028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의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안 제22조의2제1항)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

- (2자녀 이하 가구 자동차 취득건수 추정) 3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중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가구의 비중($6.1\% = \text{감면건수} / \text{가구수}$)이 2자녀 양육 가구도 같을 것으로 가정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2023.10.)에 따른 2022년 기준 다자녀(3자녀) 양육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감면 건수는 27,747건(481억원)
 - 통계청, 「인구총조사」 상 미성년자녀를 양육 중인 전체 가구수(2022년 기준)는 469.1만가구이며, 그 가운데 2자녀 가구는 224.5만가구, 3자녀 이상 가구는 45.6만가구로 집계¹⁾
 - 「2023년 지방세통계연감」 (2023.10)의 최근 자료(2022년 기준)와 맞추기 위해 인구총조사 자료는 2022년 기준을 적용
- (향후 2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 건수 전망) 향후 2자녀 이상 양육가구의 자동차 취득건수는 최근 3년(2020~2022년)간 3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 건수 감소율 16.0%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가정
- (향후 1건당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 최근 3년(2020~2022년)간의 3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 1건당 감면액 연평균 증가율(4.0%)을 반영한 감면액이 2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은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차(7인 미만 승용차)의 감면한도를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하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로는 목별 감면액이 구분되지 않아 감면 한도 인상의 추계는 제외하고 추계

□ (안 제36조의5제1항)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가구당 평균 취득세 감면액과 향후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건수를 각각 추정한 뒤 곱하여 추계

1)

[표] 미성년자 양육 가구수 현황: 2022년

(단위: 가구)

구 분	합 계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가구수	4,690,686	1,989,297	2,245,478	455,911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택 취득가액) 향후 가구당 평균 주택 취득가액은 시도별 주택중위가격 수준일 것으로 가정
 -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중위가격을 바탕으로 2024년의 경우 2024년 8월 기준 중위가격이 연간 유지되며, 2025년 이후에는 2024년 8월 기준 전년동기대비('23.8) 증감률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 추계시점 현재(2024.9)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서 2024년 8월까지의 시도별 주택중위가격을 조회할 수 있음
-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건수) 향후 출산 가구는 전부 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하며, 전체 주택매매건수 중 출산 가구가 취득하는 주택의 비중은 일반 가구 중 출산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과 동일하다고 가정
 - (전체 주택매매건수) 2024년 이후 주택매매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현황을 바탕으로 주택매매량이 급증했던 2020~2021년을 제외한 최근 3년간(2019년, 2022년, 2023년) 평균 주택매매건수만큼 발생한다고 가정
 - (출산 가구 수)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상 출생아 수와 「인구총조사」상 일반 가구 수를 바탕으로 향후 출산 가구 수, 출산 가구 비중 추정
 - 출산 가구 수는 출생아 수와 동일하며, 향후 출생아 수는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상 최근 3년간(2021~2023년(잠정)) 출생아 수의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
 - 향후 일반 가구 수는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상 최근 3년간(2021~2023년)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연장(안제22조의2제1항)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

득하는 경우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

- ①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① 이외의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④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⑤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다만, ②의 경우에는 140만원을 한도로 함

○ 상기 이외에 다음과 같은 대체취득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 개정안에 따른 조정사항

- 18세 미만의 자녀 요건: (현행) 3자녀 이상 → (개정안) 2자녀 이상
- 7인 미만 승용차의 감면한도: (현행) 140만원 → (개정안) 200만원
- 적용기간: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 (감면실적) 최근 3년간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은 2020년 630억원(39,333건)에서 2022년 481억원(27,747건)으로 감소추세(건수 16.0%, 감면액 12.6%)

○ 1건당 감면액은 2020년 160만원에서 2022년 173만원으로 증가추세(4.0%)

[표 2] 최근 3년간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액 추이

구분	2020	2021	2022	합계	연평균 증가율
건수(건)=A	39,333	34,928	27,747	102,008	-16.0%
취득세 감면액(억원)=B	630	597	481	1,708	-12.6%
1건당 감면액(만원)=B/A	160	171	173	-	4.0%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및 결과

- 다자녀 양육자 취득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대상을 2자녀 이상 양육자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2025년 1,899억원, 2027년 1,449억원 등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5,007억원(연평균 1,669억원) 취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향후 2자녀 이상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 건수는 2022년 기준 2자녀 이상 가구(270.1만가구)에 3자녀 이상 양육 가구 가운데 자동차 취득세 감면 비중 6.1%과 최근 3년(2020~2022년) 3자녀 이상 양육자 자동차 취득건수 연평균 감소율(16.0%) 적용하여 추계
 - 향후 2자녀 이상 양육자의 취득 자동차 1건당 취득세 감면액은 최근 3년(2020~2022년)간 3자녀 이상 양육자 1건당 자동차 취득 감면액 연평균 증가율(4.0%) 적용하여 추계

[표 3] 향후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취득세 감면의 세수 감소액
(단위: 가구,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가구수(A)	97,635	82,004	68,875	354,967	70,993
1건당 감면액(B)	194만원	202만원	210만원	-	-
취득세 감소액(A×C)	1,899	1,659	1,449	5,007	1,669

나.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의 취득세 감면 확대 연장(안제36조의5제1항)

(1) 추계방법

- (가구당 평균 취득세 감면액) 한국부동산원의 시도별 주택중위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시도별 가구당 평균 취득세액 및 취득세 감면액 추계
 - 2024년 주택중위가격은 2024년 8월 기준 가격이 유지되며, 2025년 이후에는 2024년 8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표 5] 주택중위가격 추정: 2025~2028년

(단위: 억원, %)

	주택중위가격			주택중위가격 추정(억원)			
	2023.8	2024.8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025	2026	2027	2028
서울	6.6	6.8	2.83	6.9	7.1	7.3	7.6
부산	2.5	2.5	-0.98	2.4	2.4	2.4	2.4
대구	2.6	2.5	-1.76	2.5	2.4	2.4	2.3
인천	2.5	2.6	4.25	2.7	2.9	3.0	3.1
광주	2.0	2.1	1.54	2.1	2.1	2.2	2.2
대전	2.7	2.7	0.64	2.7	2.8	2.8	2.8
울산	2.5	2.4	-0.52	2.4	2.4	2.4	2.4
세종	5.3	5.1	-3.63	4.9	4.7	4.5	4.4
경기	3.8	3.8	1.43	3.9	3.9	4.0	4.0
강원	1.3	1.4	1.30	1.4	1.4	1.4	1.4
충북	1.4	1.4	2.46	1.5	1.5	1.6	1.6
충남	1.4	1.4	1.25	1.5	1.5	1.5	1.5
전북	1.1	1.1	1.39	1.1	1.1	1.2	1.2
전남	1.0	1.1	1.47	1.1	1.1	1.1	1.1
경북	1.2	1.2	-0.10	1.2	1.2	1.2	1.2
경남	1.5	1.5	-1.03	1.5	1.5	1.5	1.5
제주	2.3	2.3	-0.02	2.3	2.3	2.3	2.3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택중위가격을 바탕으로 주택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시도별 평균 취득세액을 산출하고, 개정안에 따른 주택 취득가액 및 감면한도 인상을 반영하여 취득세 감면액 추정
 -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취득당시가액별로 1~3% 수준
 - 취득당시가액: (현행) 12억원 이하 → (개정안) 15억원
 - 감면한도: (현행) 500만원 → (개정안) 800만원

[표 6] 1가구당 주택 취득세액 산출: 2025~2028년

(단위: 만원)

	2025	2026	2027	2028
서울	1,133	1,259	1,393	1,537
부산	243	241	238	236
대구	247	243	239	234
인천	274	285	298	310
광주	209	212	215	218
대전	273	275	277	279
울산	244	242	241	240
세종	489	471	454	438
경기	387	393	398	404
강원	138	140	141	143
충북	148	152	156	160
충남	147	148	150	152
전북	113	115	116	118
전남	107	109	110	112
경북	115	115	115	115
경남	151	150	148	147
제주	228	228	228	228

[표 7] 개정안에 따른 1가구당 감면액 추정: 2025~2028년

(단위: 만원)

	2025	2026	2027	2028
서울	300	800	800	800
부산	0	241	238	236
대구	0	243	239	234
인천	0	285	298	310
광주	0	212	215	218
대전	0	275	277	279
울산	0	242	241	240
세종	0	471	454	438
경기	0	393	398	404
강원	0	140	141	143
충북	0	152	156	160
충남	0	148	150	152
전북	0	115	116	118
전남	0	109	110	112
경북	0	115	115	115
경남	0	150	148	147
제주	0	228	228	228

□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건수) 주택매매건수를 바탕으로 일반 가구 중 출산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하여 향후 주택을 취득하는 시도별 출산 가구 수 추계

- (일반 가구 수) 향후 일반 가구 수는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상 최근 3년간 (2021~2023년)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

[표 8] 일반 가구 수 추정: 2024~2028년

(단위: 천 가구, %)

	일반 가구 수				일반 가구 수(추정)				
	2021	2022	2023	3년 연평균 증감률	2024	2025	2026	2027	2028
서울	4,047	4,099	4,142	1.2	4,190	4,239	4,288	4,338	4,389
부산	1,431	1,448	1,462	1.1	1,478	1,494	1,510	1,527	1,543
대구	1,001	1,011	1,033	1.6	1,050	1,067	1,084	1,101	1,119
인천	1,184	1,213	1,242	2.4	1,273	1,304	1,335	1,368	1,402
광주	616	623	628	1.0	634	640	646	652	658
대전	640	646	655	1.1	662	670	678	685	693
울산	451	454	458	0.7	462	465	468	472	475
세종	145	154	156	3.8	162	168	175	181	188
경기	5,291	5,407	5,500	2.0	5,608	5,718	5,830	5,944	6,060
강원	675	685	698	1.7	711	723	736	748	761
충북	696	705	720	1.8	733	746	759	772	786
충남	916	931	949	1.8	966	983	1,000	1,018	1,036
전북	772	778	787	0.9	794	801	809	816	824
전남	777	785	793	1.0	801	809	818	826	834
경북	1,157	1,166	1,167	0.4	1,172	1,177	1,182	1,187	1,192
경남	1,379	1,393	1,404	0.9	1,417	1,430	1,444	1,457	1,470
제주	271	276	278	1.3	282	286	289	293	297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출산 가구 수) 출산 가구 수는 출생아 수와 동일하며, 향후 출생아 수는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상 최근 3년간(2021~2023년(잠정)) 출생아 수의 연평균 증감률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

[표 9] 출산 가구 수 추정: 2025~2028년

(단위: 가구, %)

	출생아 수(출산 가구 수)				출생아 수(출산 가구 수)(추정)			
	2021	2022	2023 (잠정)	3년 연평균 증감률	2025	2026	2027	2028
서울	45,531	42,602	39,456	-6.9	34,192	31,829	29,630	27,582
부산	14,446	14,134	12,866	-5.6	11,459	10,814	10,206	9,631
대구	10,661	10,134	9,410	-6.1	8,306	7,803	7,331	6,888
인천	14,947	14,464	13,659	-4.4	12,482	11,932	11,406	10,904
광주	7,956	7,446	6,172	-11.9	4,788	4,217	3,714	3,272
대전	7,414	7,677	7,194	-1.5	6,981	6,876	6,773	6,672
울산	6,127	5,399	5,082	-8.9	4,215	3,839	3,496	3,184
세종	3,570	3,209	2,761	-12.1	2,135	1,878	1,651	1,452
경기	76,139	75,323	68,817	-4.9	62,199	59,133	56,218	53,446
강원	7,357	7,278	6,688	-4.7	6,080	5,797	5,527	5,270
충북	8,190	7,452	7,580	-3.8	7,015	6,749	6,493	6,246
충남	10,984	10,221	9,436	-7.3	8,106	7,513	6,964	6,454
전북	7,475	7,032	6,622	-5.9	5,866	5,521	5,197	4,891

전남	8,430	7,888	7,828	-3.6	7,269	7,005	6,750	6,504
경북	12,045	11,311	10,186	-8.0	8,614	7,921	7,284	6,699
경남	15,562	14,017	13,049	-8.4	10,942	10,019	9,175	8,401
제주	3,728	3,599	3,222	-7.0	2,785	2,589	2,407	2,237

주: 출산 가구 수는 출생아 수와 동일하다고 가정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출산 가구 비중) 일반 가구 및 출산 가구 추정치를 바탕으로 2025~2028년 출산 가구 비중 추정

[표 10] 일반 가구 중 출산 가구 비중 추정: 2024~2027년

(단위: %)

	2025	2026	2027	2028
서울	0.81	0.74	0.68	0.63
부산	0.77	0.72	0.67	0.62
대구	0.78	0.72	0.67	0.62
인천	0.96	0.89	0.83	0.78
광주	0.75	0.65	0.57	0.50
대전	1.04	1.01	0.99	0.96
울산	0.91	0.82	0.74	0.67
세종	1.27	1.07	0.91	0.77
경기	1.09	1.01	0.95	0.88
강원	0.84	0.79	0.74	0.69
충북	0.94	0.89	0.84	0.80
충남	0.82	0.75	0.68	0.62
전북	0.73	0.68	0.64	0.59
전남	0.90	0.86	0.82	0.78
경북	0.73	0.67	0.61	0.56
경남	0.76	0.69	0.63	0.57
제주	0.97	0.89	0.82	0.75

- (전체 주택매매건수) 2024년 이후 주택매매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현황을 바탕으로 주택매매량이 급증했던 2020~2021년을 제외한 최근 3년간(2019년, 2022년, 2023년) 평균 주택매매건수만큼 발생한다고 가정

[표 11] 주택매매건수 현황: 2019~2023년

(단위: 호)

	2019	2020	2021	2022	2023	3년 평균 ¹⁾
서울	131,379	177,757	126,834	56,007	64,361	83,916
부산	53,890	109,139	69,646	31,214	34,027	39,710
대구	42,956	66,096	31,113	15,031	25,325	27,771
인천	61,672	93,758	88,059	35,346	38,410	45,143
광주	27,449	38,929	32,588	17,653	17,396	20,833
대전	35,920	39,208	25,324	12,192	16,377	21,496
울산	17,119	29,484	22,088	11,615	13,437	14,057
세종	6,037	13,543	7,701	2,994	5,606	4,879

	2019	2020	2021	2022	2023	3년 평균 ¹⁾
경기	205,815	371,113	264,334	110,361	138,129	151,435
강원	22,454	35,524	41,405	25,682	22,966	23,701
충북	24,290	38,491	41,183	25,359	25,684	25,111
충남	35,773	51,312	53,858	32,187	31,238	33,066
전북	26,856	41,476	38,702	25,598	22,434	24,963
전남	28,033	38,767	33,503	22,206	21,736	23,992
경북	34,513	54,138	54,157	34,594	32,976	34,028
경남	43,123	70,161	72,616	42,321	38,260	41,235
제주	7,993	10,409	12,060	8,430	6,692	7,705

주: 1) 주택매매량이 급증했던 2020~2021년을 제외한 최근 3년간(2019년, 2022년, 2023년) 평균 주택매매건수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건수) 전체 주택매매건수를 바탕으로 일반 가구 중 출산 가구 비중을 적용하여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건수 추정

[표 12]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건수 추정: 2025~2028년

	2025	2026	2027	2028
서울	677	623	573	527
부산	305	284	265	248
대구	216	200	185	171
인천	432	403	376	351
광주	156	136	119	104
대전	224	218	212	207
울산	127	115	104	94
세종	62	52	44	38
경기	1,647	1,536	1,432	1,335
강원	199	187	175	164
충북	236	223	211	200
충남	273	248	226	206
전북	183	170	159	148
전남	215	206	196	187
경북	249	228	209	191
경남	315	286	260	236
제주	75	69	63	58

- (출산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추정한 시도별 가구당 평균 취득세 감면액과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건수를 곱하여 개정안에 따른 출산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추계

- (2025년) 현행 적용기한 내이므로 주택 취득가액 및 취득세 감면한도 상

향 조정에 따른 감면액 증가분을 의미

- (2026~2028년) 적용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 면제액 전체를 의미

[표 13] 출산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2025~2028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감면액	20.3	169.9	158.6	148.3

(2) 추계결과

- 출산 가구가 출산한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 취득가액 및 취득세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수는 2025년 20.3억 원, 2028년 148.3억 원 등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497.1억 원(연평균 124.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2025년) 현행 적용기한 내이므로 주택 취득가액 및 취득세 감면한도 상향 조정에 따른 감면액 증가분만큼만 세수효과 발생
 - (2026~2028년) 적용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액 전체에 해당하는 세수효과 발생

[표 14]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감면 확대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계	연평균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연장(안 제36조의5)	-20.3	-169.9	-158.6	-148.3	-497.1	-124.3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최천규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838	choi1009@assembly.go.kr